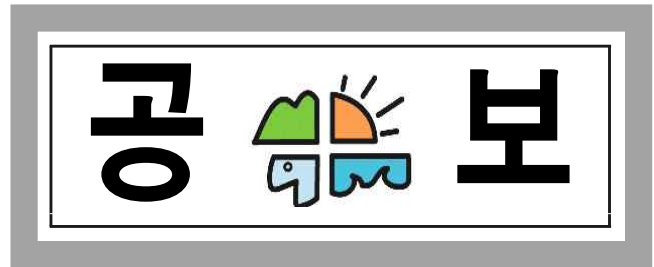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97호 2014년 10월 31일(금)

규 칙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훈 령

- 속초시공영개발사업주택점포복리시설등분양규정 폐지규정..... 11

공 고

- 신조 공인등록사항 공고..... 12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회 랑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24호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회원"이란 1월 미만 단위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모집한다.

② 자유수영 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접수) 회원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20일부터 24일까지
2. 신규회원 : 매월 25일부터 28일까지
3. 추가접수 : 매월 29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시)
4. 접수시간 : 기간 내 07시부터 20시까지

제5조(회원카드) ①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 시 정해진 제작비를 부과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시금고(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후 다음 날 입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을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월 이용일의 1/2를 초과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카드결제자는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연기) ①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회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시 1개월 범위에서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물함 대여) ① 센터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을 대여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월 사용료 : 5,000원

② 사물함 이용권을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제12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옷장(사물함) 열쇠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제13조(안전수칙준수) 고객은 별표 1의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장 또는 경고조치 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외 원 카 드

(앞면)



(뒷면)


00000001

서 명
Authorized Signature

- 본 카드는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증입니다.
- 본 카드는 본인만이 사용가능하며 입장 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
- 분실, 파손 시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Sokcho Information Sports Center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89
TEL. 033-631-8365

속초국민체육센터 외원가입 신청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신청구분	회원구분	☐ 성인 ☐ 청소년·군인 ☐ 어린이·경로대상자			
	신청종목	☐ 초급 ☐ 중·고급 ☐ 자유수영 ☐ 헬스 ☐ 에어로빅			
	강습시간	수영 (: ~ :) / 에어로빅 (: ~ :)			
신청기간	월 일 ~ 월 일 (개월) ※ 수영강습반은 1개월 단위로만 신청가능				
접수구분	☐ 신규 ☐ 재등록				
할인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여성(13세~55세)			할인여부확인 (증명서 등)	
건강상태	☐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질환명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회원접수 확인증	유 의 사 항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신 청 자 : 상기와 같이 접수함. 확인자 :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장(인) 속초국민체육센터	① 속초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②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입니다 ③ 발급된 회원카드는 입장 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십시오. ④ 센터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입니다. ⑤ 중환자 또는 질병(심장, 혈압이상)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한 분은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⑥ 본 센터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수영복(모자 필수), 운동복, 실내 운동화, 개인사위도구(수건, 비누포함)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이용자는 시설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033)639-3713~3715

【별지 제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 재

【20 년 월 일】

(단위 : 명/원)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회 원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회 원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별지 제4호서식】

감면신청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감면내용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가족) ☐ 고엽제후유자(본인, 가족) ☐ 5·18 민주유공자(본인, 가족) ☐ 장애인(본인, 1~3급 장애인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할인(2종목이상, 3개월, 6개월, 12개월, 여성할인)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				
기 재 요 령	1. 감면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국가보훈증, 복지카드, 수급자증명, 학생증 등을 기재한다. 3.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할인의 경우는 수영만 해당됩니다.			

환 불 신 청 서

1. 원 금 액	금
2. 공제/일수	% + 일
3. 최종금액	금
4. 접 수 자	

결	담당자	담 당	과 장
재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 수영 ☐ 헬스 ☐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첨부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

환 불 접 수 증

[고 객 용]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 수영 ☐ 헬스 ☐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1.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환급적용 불가)으로 정산합니다.
2. 1개월 총 이용일수를 25일로 하고, 반환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용연기 신청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연기내용	연기기간		해소일자	
	연기사유	질병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처리결과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				
기재요령	1. 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병원진단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한다. 3. 연기는 7일이상시 1개월 범위내 1회만 가능 4.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정이유

속초국민체육센터 정상운영에 따라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 처리기준 및 회원들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공영개발사업주택점포복리시설등분양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직인)

2014 . 10 . 31 .

속초시 훈령 제 669 호

속초시공영개발사업주택점포복리시설등분양규정 폐지규정

속초시공영개발사업주택점포복리시설등분양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속초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에 따라 공인 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속 초 시 장

1. 공인 신조사유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

2.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1개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최초사용연월일	사유	비 고
신조	속초시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장 인		한글훈민정음체 3.6cm 정방형 (목재)	2014. 10. 31	위원회 운영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담당)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속 초 시 장

1. 조례안명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4. 10. 31. ~ 2014. 11. 20. (20일간)

3.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안 제30조 제6호 별표6, 안 제30조 제7호 별표7, 안 제30조 제8호, 안 제30조 제9호 별표9, 안 제30조 제10호 별표10, 안 제30조 제13호 별표13, 안 제30조 제19호 별표19)

-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를 허용하는 시설열거방식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제한면적 일부개정(안 제23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안 제30조 제11호~13호, 제15호, 제16호, 제19호, 제20조, 제22호, 제23호, 제31조 14호, 제32조 제14호, 제33조제8호, 제39조 제10호, 제44조 제12호, 제45조제13호, 제46조제 13호)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34조)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

- 지구단위계획 용어의 정리(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시설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자연·수변경관지구내 설치 가능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을 10톤 → 16톤으로 변경(안 제31조 제11호, 안 제32조 제11호)

마.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 내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개선을 권고('14.2.11.)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60조제5항~제6항, 안 제60조의2, 제67조의2)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안 제50조제19호 및 제55조제1항제19호)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70조)

아.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개선

- 타법률 및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등의 변경 반영(안 제56~58조)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안 별표 15 제12호)
- 오탁자 보완(안 제41조제1항 제1호)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참조 건설도시과 FAX 639-2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033-639-2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제2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후단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9호 및 제23호 중 “건축할 수 있는”을 각각 “건축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31조제11호 중 “10톤”을 “16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2조제11호 중 “10톤”을 “16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3조제8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4조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중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5층 이하”를 “5층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50조제19호 중 “4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제55조제2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속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제62조의2(서면심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장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0조부터 제73조) 및 제7장 보칙(제74조부터 제76조)를 각각 제6장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1조부터 제74조 및 제7장 보칙(제75조부터 제77조)로 하고, 제6장제2절(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공동위원회

제7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30조제3항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3호 나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14호 본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의 17호 본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2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14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한-----
			-----	-----.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	영 제43조제4항제8호-----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	-----
			-----	지구단위 계획구역-----
			-----	-----
			-----	-----
			-----	-----
			-----	-----
			-----	-----

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2.·3. (생략)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

1

-----, ----- 지구단위계획

-----.

가. ~ 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지
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
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
여야 한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 6. (생략)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
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
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
로를 말한다.

1. (생략)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

제17조(조건부 허가) -----

법 제57조제4항-----
-----.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1. (현행과 같음)

2

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할 수 있다.

3. (생 략)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 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 설>

- - - - - .

지 구 단 위 계 획 - - - -

-----.

3.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
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
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
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
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
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
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
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
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
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 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 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

----- 도시계획위원회
의에 자문할--- -----.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신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23. (현행과 같음)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생략)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 1 .

----- 16톤

12. · 13. (현행과 같음)

1 4 .

자원순환관련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10. (현행과 같음)

1 1 .

----- 16톤

12.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생략)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
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
설

9. (생략)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
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
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
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
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2. · 13. (현행과 같음)

1 4 .

자원순환관련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7. (현행과 같음)

8 .

자원순환관련시설

9. (현행과 같음)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지구단위계획-----
-----.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① -----

-----.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 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1.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
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5층 이하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
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3. ~ 15.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중 격리병원

3. ~ 9. (현행과 같음)

1 0

자원순환관련시설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높이) ① -----

-----.

1. ----- 5층 이상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11. (현행과 같음)

1 2

자원순환관련시설

13. ~ 15. (현행과 같음)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4. · 15. (생략)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 21. (생략)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12. (현행과 같음)

1 3 .

자원순환관련시설

14. · 15. (현행과 같음)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1. ~ 18. (현행과 같음)

19.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7항-----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 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frac{(1 + 0.3\alpha)}{(1 - \alpha)} \times (\text{제55조제1항 각 호}$$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제58조(공지의 설치·구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 85조제8항-----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구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 α)/(1 - α)]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60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하되 두 차례만 -. -----

----.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제62조의2(서면심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
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
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
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
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
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
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
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
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
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
----- 자문에 응
하기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

<신 설>

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
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
· 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
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
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재2절 공동위원회

제7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법30조제3항단서 또는 제
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
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
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
25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
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
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위원
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
간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
조 내지 제64조, 제65조 내지 제6

9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0조 ~ 제73조 (생략)

제7장 보칙

제74조 ~ 제76조 (생략)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1조 ~ 제74조 (현행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와 같음)

제7장 보칙

제75조 ~ 제77조 (현행 제74조부터 제76조와 같음)